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. 7. 20 선고 2022가단23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2. 6. 15.

판 결 선 고 2022. 7. 20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법원 2005. 9. 28.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,

나. 피고 C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7. 10. 16. 접수 제44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
다. 피고 D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7. 10. 16. 접수 제44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: 피고 주식회사 B, C)3. 공시송달에 의한
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: 피고 D)

판사 제해성

별지